

제2644호
2019. 3. 28.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
 편집인: 홍보 전 산 과 장 김 창 수
 전화: 3396-4955
 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선	기관의장
람	

구 보

● 고 시

제2019-35호 : 세운6-3-1,2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2

● 공 고

제2019-234호 : 세운6-3-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·공고 5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5 / FAX.(02)3396-9022/3
 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람												



고 시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 -35호

세운6-3-1,2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.)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7호(2009.0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0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389호(2014.11.13.)로 세운6-3-1구역과 6-3-2구역 통합 변경 결정 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27호(2015.04.21.)로 사업시행인가 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77호(2015.9.11.)로 관리처분인가된 중구 을지로4가 261-4번지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1,2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제74조 및 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(경미한)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내용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3396-5782)에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19년 3월 28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가. 종 류 :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 - 나. 명 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1,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 - 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261-4번지 일원
 - 나. 면 적 : 14,707.30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가. 성 명 : 더 유니스타(주) 대표 박래영
 - 나. 주 소 :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52
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2015.04.21. ~ 2019.10.20.
5.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: 2015.09.11.
6.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

가. 토지이용계획 변경

구 분		변 경 전	변 경 후	비 고
총 계 (㎡)		14,858.84	14,707.30	(감)151.53
택지	대지	10,180.11	10,032.01	감) 148.1
정비기반 시설면적 (㎡)	도로	4,084.21	4,130.50	(증)46.29
	녹지	594.52	544.80	(감)49.72
	소계	4,678.73	4,675.30	(감)3.43

나. 건축계획 변경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	비 고
대지면적(㎡)	10,180.11	10,032.00	(감)148.11
건축면적(㎡)	6,477.49	6,342.22	(감)135.27
건 폐 율(%)	63.63	63.22	(감)0.41
연 면 적(㎡)	144,682.14	146,655.77	(증)1,973.63
용 적 륜(%)	903.83	925.31	(증)21.48
층 수	지하8층,지상20층	지하8층,지상20층	-
용 도	업무,근생,문화및집회시설	업무,근생,문화및집회시설	-

다. 권리자별 관리처분 변경

유 형	대상	분 양					청산 또는 손실보상					비 고
		소계	업무 시설	근생 시설	업무, 근생 시설	소계	청산	수용	협의보 상	그밖의 처분		
변경 전	계	60	7	-	6	1	53	3	45	5		
	토지 및 건축물	34	5	-	4	1	29	-	29	-		
	토지	26	2	-	2	-	24	3	16	5	국공 유지	
	건축물	-	-	-	-	-	-	-	-	-		
변경 후	계	59	1	-	-	1	58	3	51	4		
	토지 및 건축물	34	1	-	-	1	33	-	33	-		
	토지	25	-	-	-	-	25	3	18	4	국공 유지	
	건축물	-	-	-	-	-	-	-	-	-		

라. 관리처분계획 변경 세부내역

구 분		변 경 전	변 경 후	비 고
처분면적 (㎡)	환지시설	22,335.5327	22,338.0157	(증)2.4830
	체비시설	121,886.7952	124,317.7535	(증)2,430.9583
	보류시설	459.8121	-	(감)459.8121
	계	144,682.1400	146,655.7692	(증)1,973.6292
종후감정 평가(원)	환지시설	105,956,912,697	105,965,269,672	(증)8,356,975
	체비시설	572,957,104,054	573,632,087,978	(증)674,983,924
	보류시설	597,335,549	-	(감)597,335,549
	계	679,511,352,300	679,597,357,650	(증)86,005,350

7. 관련서류 : 생략 (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 비치서류와 같음)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-234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4-119 (2014.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-128호(2017.12.29.)로 사업시행인가 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-24호(2019.3.13.)로 관리처분인가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.공고합니다.

2019년 03월 28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세운6-3-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.공고

1. 공람기간 : 2019. 3. 28. ~ 2019. 04. 11. (14일간)
2. 공람장소 :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 3396-5753)
3. 공람내용
 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세운6-3-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 - 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:
 - 위 치 : 서울시 중구 인현동2가 151-1번지 일대
 - 시행면적 : 6,603.5㎡
 - 다.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
 - 명 칭 : 더 유니스타제이차(주) 대표 박래영
 - 주 소 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, 213호(역삼동, 한신인터벨리24) (☎) 2222-5000
 - 라. 정비사업 시행기간 : 사업시행(변경)인가일로부터 54개월
 - 마. 사업시행인가일 : 2017.12.29.

바. 주요 사업시행변경 내용

-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연면적 증가(당초 51,169.54m²→51,243.05m², 증 73.51m²)
- 단위세대 내부 평면변경 및 전용면적 변경
- 승강기 증설(당초 7대→10대, 증 3대)
- 세대간 벽체두께 변경 (당초 200mm→210mm, 증 10mm)
- 부대복리시설(경로당, 입주자집회소, 작은도서관 등) 평면변경 등

4. 관계도서 : 세운 6-3-4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을 위한 관계도서를 증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하고 있으니, 내방하시어 공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공람 도서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이며,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및 관계법령의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